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다53365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하귀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5나10818 판결
판 결 선 고	2008.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

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소외 1, 2, 3, 4 등은 소외 2와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망인을 집단폭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1, 2, 3, 4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망인의 부모인 소외 5, 6, 누나인 소외 7은 2004. 2. 16.경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773호로 소외 1, 2, 3, 4 및 그 각 부모인 원고, 피고, 소외 8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04. 3. 22.경 소외 8과 함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결과,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인 소외 1, 2, 3, 4 및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 피고, 소외 8 등으로부터 피고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 공탁금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소외 1, 2, 3, 4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와 소외 8 및 그 가족(소외 3, 4 포함)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및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측은 피고와 소외 8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위 합의금 중 그들의 출연액을 초과한 판결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의 부담부분 중 자신의 출연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채무면제가 피해자측의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민사소송에서 위 채무면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손해배상액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잘못으로 추가로 지출한 돈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담부분과 면제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따라서 이 경우 구상의 범위는 구상을 당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은 합계 239,133,731원이고, 원고측과 피고측의 책임비율이 각 25%로서 그 각 부담부분은 59,783,432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 지급한 금액이 합계 91,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31,216,568원(= 총 지급액 91,000,000원 - 원고의 부담부분 59,783,432원)이라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1,216,568원 중 10,405,522원(= 31,216,568원 × 1/3, 원 미만 버림)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액만큼만 구상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500,000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구상금 10,405,522원을 추가하게 되면 피고의 부담부분 59,783,432원을 초과하게 되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연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심리하여 거기에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을 추가하면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